개인실손의료비보험 재개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이 특별약관은 개인실손의료비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의해 중지된 계약을 재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비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비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①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서 정한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이라 합니다)이 종료된 경우에는 단체실손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재개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재개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실손 계약종료 전이라도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중지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중 단체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종목에 대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기본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약의 소멸>

① 기본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합니다.

④ 계약재개 되는 개인실손은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재개제도 특별약관이 부가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개인실손(이하, '재개용 개인실손'이라고 합니다)으로 재개됩니다. 다만, 재개시점에 재개용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판매중지 직전에 판매한 재개용 개인실손으로 재개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을 받고,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중지되었던 개인실손이 계약재개 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계약재개 승낙의 요건),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되는 경우 계약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계약재개 승낙의 요건>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를 승낙합니다.

①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이 중지된 후 피보험자의 단체실손 보장공백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변경은 보장공백기간으로 보지 않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공백기간 계산 시 금번 단체실손 종료일(단체실손 종료일이란 계약재개 계약자가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 이전에 개인실손을 중지·재개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로부터 계약재개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함

④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중지된 개인 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

1. 보장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자기부담금
4.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계약재개 청약 불가 사유>

회사는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기본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① 기본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재개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재개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⑨ 제8항에 따라 보장이 개시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따라 중지된 개인실손은 소멸합니다.

⑩ 회사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등 계약재개 승낙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에 따라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됩니다.

제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실손재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5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 (기타사항)

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②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합니다) 및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청약일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제2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